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형사공탁 시 판결선고 전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의무화 〉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2274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정부
2. 제 출 일: 2024. 7. 26.
3. 회 부 일: 2024. 7. 2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Ⅲ. 검토의견

####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반드시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 「공탁법」 및 「공탁규칙」에 따르면, 공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탁물 수령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공탁서에 기재하여야 함.<sup>1)</sup>

그런데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현행 「공탁법」 제5조의2제1항<sup>2)</sup>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였음. 이는 기존 공탁제도하에서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등 2차 피해 발생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이었음.<sup>3)</sup>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sup>4)</sup>의 「2024 양형 기준」에 따르면, 공탁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형의 감경요소에 포함하고 있음.

1) 「공탁법」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규칙」 제20조(공탁서) 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3)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741호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4)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살인범죄 양형기준>

| 구분             |        |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br>양형<br>인자 | 행위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과잉방위</li> <li>○ 미필적 살인의 고의</li> <li>○ 피해자 유발(강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 살인 범행</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사체손괴</li> <li>○ 잔혹한 범행 수법</li> <li>○ 존속인 피해자</li> <li>○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4유형)</li> <li>○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
|                |        | 미수 |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 중한 상해                                                                                                                                                                                                                               |
|                | 행위자/기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 및 언어 장애인</li> <li>○ 심신 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 또는 <b>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li> <li>○ 특정강력범죄(누범)</li> </ul>                                                                                                                                        |
| 일반<br>양형<br>인자 | 행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li>○ 피해자 유발(보통)</li> </ul>                                                                                                                        | ○ 사체 유기                                                                                                                                                                                                                               |
|                | 행위자/기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 후 구호 후송</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4유형의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li> <li>○ 진지한 반성</li> <li>○ <b>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b></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4 양형 기준」, 362p

그 결과,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개정 「공탁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을 사유로 양형에서 감경되고 판결선고 후에는 공탁금을 회수해가는 이른바 “기습 공탁·회수”사례까지 등장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sup>5)</sup>

5) KBS 2024.01.07. 보도,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0075&ref=A>

이에 개정안은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형감경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동 제도 도입 시 피해자가 판결 선고 전에 공탁 관련 의견을 제기할 수 있어 기습공탁을 통한 부당한 양형 감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청취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거나 선고를 연기하는 등 공판절차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서를 제출하는 등 불수령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형사공탁이 재판지연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재판부가 피해자 의사의 존중 원칙하에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 청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는 방안, 의무적 의견청취 원칙하에 피해자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두는 방안 등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탁법」 제5조의2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4. 8. 12. 제133차 회의에서 양형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는 등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하는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sup>6)</sup>한바 있고, 형사공탁 시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293호, 정부제출)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 법원행정처는 형사공탁에 대하여 피해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은 재판 지연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견 청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063 |

---

6) 2024. 8. 12. 양형위원회 보도자료 “양형위원회 8/12[월] 제133차 회의 결과”